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 |
|----------|-----|
| 의안 번호 | 416 |
|----------|-----|

발의연월일: 2024. 10. 11.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시행되었으며(2019.3.25.),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2024.8.27.)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나. 이권 개입,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사적 노무 요구,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 및 영리행위의 신고, 성희롱 금지 등을 정함(안 제14조~제18조)

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정함(안 제21조~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결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강남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
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
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
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
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
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
다.

제8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채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각 상임위원회 부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제10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

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강남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강남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강남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금품등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價額) 범
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
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
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
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항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

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①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 및 직무와 관련한 제3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

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

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 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6조제2호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의결에 제척·회피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속 의정팀장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강남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을 금지·제한하는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2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4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

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2조제4항 관련)

| 금품등 수수 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신 고 자 | 성명 | | | | |
| | 소속위원회 | | 연락처 | | |
| | 주소 | | | | |
|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 | | |
| | 직업(소속) | | 연락처 | | |
| | 주소 | | | | |
| | 법인·단체 등의 경우 | 명칭 | | | |
| | | 소재지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제공자와 친분관계 를 맺게된 경위 | | | | | |
|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 | | | | |
| 금품등 수수 내용 | 일시 | | | | |
| | 장소 | | | | |
|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 | | |
| 증거자료 | | | | | |
| 비고 | | | | |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고자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div> | | | | | |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 |
| 활동 목적 | | | | | | |
| 활동 사유 및 경과 | | | | | | |
| 지원 받은 내역 <small>(지원기관별)</small> | | | | | | |
| 활동 기간 | . . . ~ . . . (일간) | | | | | |
| 활동 지역 <small>(방문기관)</small> | | | | | | |
| 참가자 | 소 속 위원회 | 직위 | 성명 | 정당 | 활 동 경 비 | |
| | | | | | 금액(천원) |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20 신청자 (서명) </div>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 국내외 활동보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활동 의원 | 성 명 | 직 위 | 정 당 | 소속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개요 | 목 적 | | | |
| | 지 원 기 관 (단체) | | 지 원 받은 내 역 | |
| | 기 간 | | 방 문 지 역 (방문기관) | |
|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 역별) |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p> <p style="margin-top: 20px;">20 . . .</p> <p style="margin-top: 10px;">제출자 (서명)</p> | | | |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신고자 | 성명 | | | 소속위원회 (정당) | |
| 외부강의 및 회의 유형 |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input type="checkbox"/> 회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활동 유형 |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input type="checkbox"/>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요청자 | 기관명 | | | 대표자 | |
| | 담당부서 | | | 연락처 | |
| 요청 사유 | | | | | |
| 장소 | | | | | |
| 일시 |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 | 일괄 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
| 대가 |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 | | | |
| 20 신고자 (서명) | | | | | |
|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 | | |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제5항 관련)

| 초과사례금 신고서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위원회 |
| | 직위 (직급) | 연락처 |
| 외부강의등 유형 |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 |
| 활동 유형 |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요청자 | 기관명 | 대표자 |
|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 요청 사유 | | |
| 외부강의등 주제 | | |
| 장 소 | | |
| 일 시 | 20 ~ 20 시 분 ~ 시 분 | |
| 사례금 |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
| 초과사례금 반환 | 반환여부 : | 반환금액 : |
|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
| 신고자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제6항, 제20조제3항 관련)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위원회 (정당) | 연락처 |
| 청구금액 | | |
| 반환계좌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 금품 (물품) | |
| | 수량 (금액) | |
| | 받은일시 | |
| | 반환일시 | |
| |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사람 | 성명 | 주소 |
| | 연락처 | 청구인과의 관계 |
| | 직무관련 내용 | |
| 기타 사항 | | |
| 청구인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 관련)

| 영리행위 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신고자 | 성명 | | | 선거구 | |
| | 소속위원회 (정당) | | | 구분 | |
| 영리행위현황 | 명칭 | | | | |
| | 직위 | | | 영리행위기간 | |
| | 보수 | (택) 연월 | 원원 | 전화번호 | |
| 현황 | 영리장소 (주소) | | | | |
| 기타 | | | | | |
| <p>「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p> <p>20 . . .</p> <p>신고자 (서명)</p> | | | | | |

[별지 제8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 신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 |
| | 직 업 |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
| 피신고자 | 성 명 | | 직 위 | | | |
| | 소속(정당) | | | | | |
| <p>※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p> <p>⇒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p> | | | | | | |
| 신고 내용 | | | | | | |
| 증빙자료 목 록 | <p>※ 증빙자료 첨부</p> | | | | | |
| <p>20 . . .</p> <p>신고자 성 명 (서명)</p>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신고자 | 성명 | | |
| | 소속위원회(정당) | | 연락처 |
| | 주소 | | |
|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 |
| | 직업 (소속) | | 연락처 |
| | 주소 | | |
| | 법인단체 등의 경우 | 명칭 | |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
| 신고취지 및 이유 | | | |
| 금품등 수수 내용 | 일시 | | |
| | 장소 | | |
| | 금품등의 종류 및 기액 | | |
|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 반환여부 | | |
|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
| 증거자료 | | | |
| 비고 | | |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
| 신고자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제5항 관련)

| 금품등 인도확인서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인도자 | 성명 | 소속위원회 |
| | 정당 | 연락처 |
| 신고 접수번호 | | |
| 품목 (상표) | | |
| 수량 | | |
| 가액 (상당액) | | |
| 물품사진 |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도일 : 20 . . .</p> | | |
| 인도자 | 소속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인수자 | 소속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1호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인도자 | 성명 | 소속위원회 |
| | 정당 | 연락처 |
| 신고 접수번호 | | |
| 품목 (상표) | | |
| 수량 | | |
| 가액 (상당액) | | |
| 물품사진 |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 인도자 소속 : |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2호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 일련 번호 | 신고 접수 번호 | 신고 일 | 품목 (상표) | 수량 | 가액 (상당액) | 신고자 | | | 제공자 | | | 인도 일/ 인도 경위 | 관리 부서 (관리 자) | 보관 장소 | 처리 내용 | 처리 일 | 의장 확인 |
|----------|----------------|---------|------------|----|-------------|-----|----|----|-----|------------|----|----------------------|-----------------------|----------|----------|---------|----------|
| | | | | | | 소속 | 정당 | 성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